

1. 개정이유

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사의 보증발급 급증 등으로 연내 공사의 법정 보증한도(60배) 초과가 전망됨에 따라 공사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, 주택공급 지원 등 정책보증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증의 한도 (안 제23조제1항)

- 공사가 발급가능한 보증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증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60배”를 “70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23조(보증의 한도) ① 법 제27 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<u>60배</u> 로 한다. ② · ③ (생 략) | 제23조(보증의 한도) ① ----- ----- ----- <u>70배</u>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|